

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8년 11월 19일

나. 회부일자 : 1998년 11월 19일

3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입하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율이 시중은행 금리보다는 유리하나 정부자금보다 금리가 높아 이용을 기피하고 있으며
- 재정형편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이자상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지역개발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.

4. 주요골자

-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율을 아래와 같이 인하함(안 제10조)
 - 상·하수도 및 댐주변사업 : 연리 7% → 6.5%
 - 여타사업 : 연리 8% → 7.5%
- 기타 조직개편에 따른 자구수정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지방공기업 및 지역 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·공급하고자 본 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써 현재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 하여 이자상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지역개발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

그 주요 내용으로는

- 지역개발기금의 용자조건에 있어서 용자금에 대한 이율을 상·하수도 및 댐주변사업은 현행 연리 7%에서 6.5%로 여타사업은 연리 8%에서 7.5%로 각각 0.5%씩 인하하였고
- 기타 정부 및 도가 조직개편되어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,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조정하는등 도의 지역개발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붙임

-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